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8가단341002(본소), 2021가단307187(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록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영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미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1/2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37,13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5. 3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74,554,530원, 월납입금 1,195,600원, 리스기간 60개월인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 보조참가인 소속의 딜러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면 피고가 미납 리스료 등을 정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매매대금으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7. 12. 35,000,000원, 2018. 7. 25. 2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D은 201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피고에서 G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자변경계약서를 촬영하여 휴대전화 사진으로 송부하고, 승계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리스료 정산에 사용할 것이니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즉시 이를 D에게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15.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바. D은 피고로부터 받은 55,000,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의 중개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별다른 확인 없이 D에게 다시 송금하여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D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지출한 리스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유권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에게도 G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D에게 일정 범위에서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을 뿐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의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직접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등 수권여부를 신중하게 살피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려던 시점에는 매매대금을 훨씬 넘어서는 리스료가 남아 있었고, D이 당초에는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심할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원고가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5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D은 당초 원고에게 자신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권리자에게 송금하겠다고 하자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를 기망하여 이를 다시 송금받았는바, 결국 D이 피고의 계좌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실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는 위 돈을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 대가로 자신이 취득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D에게 전달하려는 의사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거나 피고가 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로서는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승계절차를 위임하면서 승계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한하고 사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D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승계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만연히 D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D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7,500,000원(=55,000,000원×50%)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자동차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이용자로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승계자를 알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E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E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목적물 인도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E의 무자력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E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뿐인 사실은 본소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 의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한 견련관계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가 리스료를 계속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이 아직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것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청구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한 데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자동차리스업체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구하고 있는데 위 리스료는 순수한 차량의 사용가치만이 아닌 리스업체의 영업이익,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자동차관리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당이득의 범위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리스료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별지]

목 록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제원관리번호: 0082-00051-0007-1217

차 명: E220 d 4Matic

차대번호: H

원동기형식 및 연식: 654920, 2017년식. 끝.

